

# 금속법률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전화 02-2670-9500

팩스 02-2679-1790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비롯한 8개의 노동관계법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부당노동행위 벌칙조항의 법인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개정법시행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6.9.29.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부터 소급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도 개정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으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악(改惡)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5월 20일 개정되어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위 개정 법률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 개정의 배경

노조법이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은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면 노조의 자주성이 상실 및 침해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교섭한 결과로 일정하게 운영비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노동권에 대한 침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지 않아왔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을 통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하며, 나아가 차량이나 숙소를 제공케 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편의를 쟁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0-2011년경 금속노조 사업장 단체협약에 있는 각종 조항들 - 노조 사무실 유지관리비(수도전기요금, 냉난방비, 전화인터넷요금 등), 차량제공, 유류비, 회의/교육/행사장소 및 시설사용, 조합활동으로 인한 회의 및 출장 경비 등 - 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항이라며 「단체협약시정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재정적 압박을 통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운영비 원조 조항에 대한 기존의 해석(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지 실질적인 판단과 달리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며 형식적인 판단을 하며 자본과 정부의 공격에 법논리적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두15821 판결 등)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노동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노동 3권 보장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며, 두 가지에 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노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12.31 까지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을 권고하여(헌재 2018.5.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이번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노조법 81조 ①항 4호 개정

운영비 원조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었는데, 예외로 허용되는 유형 추가

- 노동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기존 조항)
-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기존 조항)
-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운영비 원조(추가 조항)

##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앞으로 어떠한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하는지와 관련한 사례와 판례들이 축적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 위반 우려라는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관한 확고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투쟁을 통해 조합활동을 활성화하고 조합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법원의 판결로 인해 **위축되었던 노동조합 활동을 회복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 각종 지원을 쟁취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합의 및 운용,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 공개성,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지회가 소수노조인 경우 회사가 기업노조 지원을 위해 이번 법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와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 노조법 81조 ②항 신설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제시 ⇨ 종합적 고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횡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 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

##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산별노조 원칙을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참고로**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자유롭게 결성되고 초경영적 토대 위에서 상대방의 참여를 배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약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초경영적 토대 위에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은 산업별 또는 직종별 조직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별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례는 독일 노동운동의 전통인 산업별 또는 직종별 조직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이철수, 독일법상의 노동조합, 노동법연구, 1992참고).

# 노조법상 양벌규정 개정

- 개정 전** 노조법상 형사처벌되는 행위(노조법 88조부터 9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이외에도 그 행위자가 속한 법인·단체 및 개인도 형사처벌
- 개정 후** 법인·단체 및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가령, 종업원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회사의 주의감독 의무 위반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으면 곧바로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결정은 기존 규정에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회사 대표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회사도 함께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집시법 개정

- 개정 전**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모든 집회 및 시위 금지
- 개정 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위기관들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허용



-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개정 전**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부터 산재 인정
- 개정 후** 2016 9. 29.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부터 소급하여 산재 인정

산재법상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그런데 2016 9. 29. ~ 2020 6. 9 개정법 시행일까지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당하였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 9. 29. ~ 2017. 12. 31. 까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당했으나 산재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집시법은 개악(改惡) 소규모 집회만 허용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우려)에 따라 집회의 제한 및 금지 기능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60년에 제정된 집회에 관한 법률은 419혁명의 유산입니다.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중 중앙관서,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을 삭제했던 1989년 집시법 개정은 87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의 유산입니다. **광화문 촛불은 무엇을 남겼나요** 개정 집시법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영역을 넓혔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집시법의 복잡한 조항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1960 7. 1 공포 및 시행된 '집회에 관한 법률'은 아래 3개 조항이 전부입니다.**

- 제1조(집회의 신고)** 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시일, 장소, 회합예상인원과 주최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늦어도 집회의 24시간 전에 소할(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종교, 학술, 체육, 친목에 관한 집회와 정당, 단체 등의 투원회(투쟁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집회는 예외로 한다.
- 제2조(평화적 시위행렬의 신고)** 평화적 시위행렬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시일, 장소, 로선, 참가예상인원수와 주최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늦어도 시위의 24시간 전에 소할 경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벌칙)**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합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에 대한 욕설을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재물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사실관계]**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그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이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문구를 써 놓은 사안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데 있고 미관이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 점, 도로에 기재한 문구들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은 점, 모욕적인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지만 도로의

이용자들이 그 문구로 인하여 불편감, 저항감을 느껴 도로의 본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상회복시 그다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이나 감정상으로 이 사건 도로를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통행에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특수재물 손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

**[판결의 의의]** 법원은 이전에도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이 래커로 국가 소유의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한 사안에서 유사한 취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6노2380).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나친 수사 및 기소 관행을 버려야 합니다.

## 조합원들 수십 명이 사전 허락 없이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 들어가 13:30분경부터 22:00경까지 구호를 외치며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연좌농성을 진행한 것은 업무방해죄 및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254 판결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흥익대와 청소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 등 60~70명)가 흥익대 사무처장의 허락 없이 사무처장실에 들어가 사무처장에게 임금인상 등에 관해 노조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약 8시간 30분간 노래를 부르고 확성기를 통해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이용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장시간 쟁의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2019노778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첫째, 위 판결은 원청/도급업체가 하청/용역업체 노동자들의 근기법 또는 노조법 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와 관계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면, 하청/용역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수단과 방법이 원청(쟁의

행위와 관계 있는 자의 재산권 등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등 쟁의행위 정당성 관련 법리상의 조건을 구비한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원청인 흥익대가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는 않으나, 청소용역도급계약의 내용과 흥익대의 용역대금 증감이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액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노조법 38조 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 없는 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위 판결은 쟁의행위 방법에 있어서 사무실의 상당 부분을 장시간 점거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이동을 제한한 행위가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었다고 보아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며 사용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쟁의행위의 방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 INTERVIEW

### 일터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

사업주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 설비를 하지 않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합니다.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잘 지키지 않습니다.

사업주들이 산안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유는 법을 위반해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는 평균 400만 원의 벌금만 내면 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나기 전에는 사업주들이 법을 지키는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정부 역시 제대로 지도 감독 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그 의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업주에 의한 살인입니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지만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고, 사업주들은 여전히 노동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게 하며, 그를 통해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는 일터와 모든 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투쟁'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를 발생킨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처벌 ▲기업과 법인 자체에 대한 처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하한형 도입과 형량 강화 등입니다.

현행 산안법에도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표이사가 처벌 받는 경우나 하청노동자 사망 시 원청이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대재해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 일터 안전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퇴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7명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익스프레스에서,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하다 다치고 병드는 노동자는 공식 통계로만 한해 8만명, 산재은폐를 모두 포함하면 비공식적으로 30만명에 달합니다.

노동자들은 매일 매 순간 다치고 병들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게 하고, 그 법을 사업주들이 지키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함께 투쟁합니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갖는 의미

- 금속법률원(서울) 서울 중구 정동길5 경향신문사 별관 3층 | 전화 (02)2670-9500 | 팩스 (02)2679-1790
- 경남사무소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2호 | 전화 (055)262-3984 | 팩스 (055)262-3985
- 충남사무소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경제진흥원) 153호 | 전화 (041)910-1414 | 팩스 (041)910-1419
- 울산사무소 울산 북구 산업로 1020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 전화(052)266-8001 | 팩스 (052) 257-3095